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08.30.

IBK 골드마이닝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 67615]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B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외주식 등의 가격하락위험, 해외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BK 골드마이닝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등에 투자하는 IBK 골드마이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90%이상 투자하여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S&P Global BMI Gold Index 90% + Call loan1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s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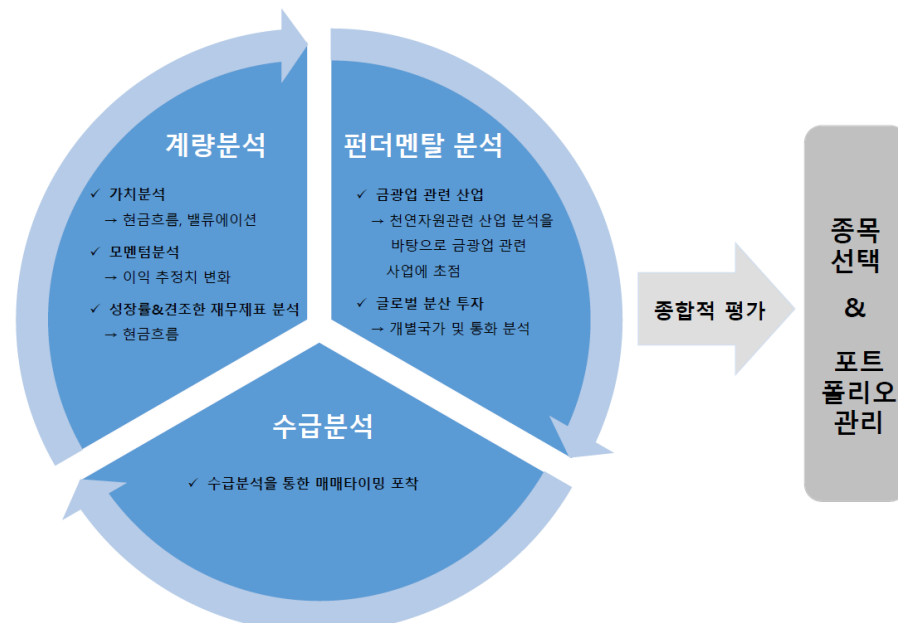
가. 기본 운용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인 IBK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IBK 골드마이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 자신의 60%이상을 금 및 귀금속 등 금광업 산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프로세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위탁운용계약에 의거 **American Century Investment Management, Inc.**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헛지전략>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헛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헛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는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화표시 자산(미국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등)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환헛지를 수행하며, 환헛지의 범위는 80%이상을 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 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헛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기 운용전략은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해외60주식형)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2.090	1.000	1.7000	2.1441	323	552	787	1,277	2,6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없음	2.190	1.100	1.8400	2.2442	236	478	726	1,242	2,657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1.590	0.500	1.2200	1.6401	221	398	581	965	2,0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2.090	1.000	1.3700	2.1425	225	456	694	1,188	2,549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8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08.31 ~ 26.08.30	24.08.31 ~ 26.08.30	23.08.31 ~ 26.08.30	21.08.31 ~ 26.08.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2007.4.13	60.01	55.56	46.24	26.25	5.60				
	비교지수(%)	-	63.67	57.74	47.68	23.40	5.98				
	수익률 변동성(%)	-	42.88	35.80	32.92	32.29	33.14				
(주1)비교지수: (설정일~2010.03.31까지):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2010.04.01~현재): S&P Global BMI Gold Index 90% + Call loan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해외60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신준형	1975	책임(이사)	34개	9,354억원	35.37	35.37	27.62	30.30	18년 10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주식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주요투자 위험	<table><tr><th colspan="2">주요투자위험</th><th colspan="2">투자위험 주요 내용</th></tr><tr><td>원본손실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tr><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tr><td>환율변동에 따른 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tr><td>해외위탁집합 투자업자 변경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 운용업무를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해외집합투자업자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집합투자업자와의 운용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해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업무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td></tr><tr><td></td><td>해지 위험</td><td colspan="3">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table>	주요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 투자업자 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 운용업무를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해외집합투자업자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집합투자업자와의 운용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해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업무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 투자업자 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 운용업무를 해외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해외집합투자업자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집합투자업자와의 운용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해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업무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table><tr><td>오후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td><td>환 매</td><td>오후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 되는</td></tr></table>	오후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	환 매	오후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오후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	환 매	오후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방법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ibk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수익자는 별도의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됩니다.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조)]				
	※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IB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27-8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bk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7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8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8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1)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8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8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C3)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고객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보유한자,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자,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권에서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